

◎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-0178호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6월 07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(2022.1.18., 법률 제18781호/ 시행 2022.7.19.)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 별표7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수상안전요원 임무 명시 등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·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(안 별표 6)
- 나.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상구조사 명시(안 별표 6)
- 다. 법률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질서(대중골프장 운영질서) 위반의 경우에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(안 별표 7)
- 라.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장부·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(안 별표 7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
- 전자우편 : free7501@korea.kr
- 팩스 : 02-3704-3490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(전화 044-3704-3156, 팩스 02-3704-349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